

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년	
신청인	성명(기관명)	생년월일	
	주소 (전화번호:)		
	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		
대상물	명칭		
	대상물 용도	수량	우수건축자산 여부 () * 시설물·건축물 및 가로·경관인 경우에는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이어야 함
	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		
	건설·제작·형성자 및 건설·제작·형성연도		
	구조 및 규모		
	연혁 및 소장 경위		
	소유자 (또는 관리자)	성명	생년월일
	주소	(전화번호:)	
선정신청 사유			
그 밖의 사항			

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장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(소유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합니다) 2.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및 문헌 자료 사본(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도면(도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(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5.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증(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이 시설물·건축물 및 가로·경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6.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검토의견서 및 소유자가 요청한 관계 전문가 조사에 따른 조사보고서(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건축물대장 2. 토지(임야) 대장 3.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. 토지등기사항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행정사항

소유자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합니다)나 관리자가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합니다)에게 제출하고, 시·도지사는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5조제3항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1.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의 검토의견서
2. 시·도지사의 조사보고서
3. 시·도유산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
4.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위치도, 지적도 및 지형도면

처리 절차

